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5. 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5월 8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36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8. 5. 21)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 김기석

가. 제안이유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춰 통·반 조직규정, 통장추천방법 및 재위촉시 평가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통장의 임무를 찾아가는 현장행정,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현실에 맞게 변경 및 통·반장 직무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골자

- 1) 1개통은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은 40세대에서 80세대로 구성하여 변화하는 거주 환경을 반영함(안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 2) 통장선정, 추천방법 및 통장의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추천 과정상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규칙에서 재위촉시 통장 평가제도 도입(안 제5조제3항)
 - 3)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 된다고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함(안 제5조제5항)

- 4) 통·반장의 임무 중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추진사업 협조, 지역 청소 및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 협조,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등 변화하는 행정상황에 맞게 실질적으로 규정(안 제7조 관련)
- 5)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통·반장이 지명한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기존 불합리한 직무대행규정을 개선(안 제7조 제2항)
- 6)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통·반장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정보화교육 등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2차에 걸쳐 24개의 행정동이 16개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통장조직은 비대해졌으나 아파트지역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통장의 역할은 감소되는 추세인 바, 지역 실정에 맞게 통·반을 현실적으로 확대조정하여 통·반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장선정과 통장추천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규칙으로 위임하여 추천과정상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통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위촉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 규정된 통과 반의 조직 구성, 안 제8조에 규정된 반상회 구성 범위, 안 제12조의2에 규정된 통·반장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